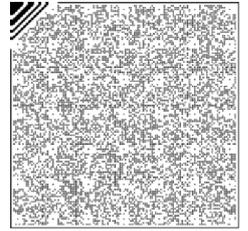




##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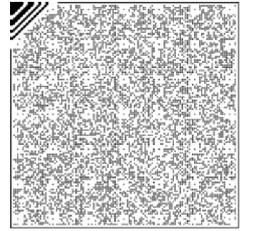
수신 해당 적치물 소유자 귀하  
(경유)

제목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알림(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166-2번지)

---

1.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.
2. 우리 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도46호선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166-2번지 도로구역 내 **불법점용(불법주정차 및 기타쓰레기 등)**을 함에 따라, 안전사고 위험 및 도로구역 훼손 등 도로 유지·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.
3. 이에 따라, 우리 사무소에서는 해당 **불법점용**을 방치할 경우 도로 유지·관리 및 도로 이용자 민원발생 등으로 공익을 해칠 것으로 판단되어 **2024.06.28**까지 자진철거 또는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「도로법」 제73조(원상회복)제4항 및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(대집행의절차)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.
4.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「행정대집행법」 제2조(대집행과 그 비용징수)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통지 후 우리 사무소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, 대집행 비용은 「행정대집행법」 제5조(비용납부명령서) 및 제6조(비용징수)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.
5. 아울러,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**2024.06.28**까지 우리 사무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상기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또는 행정대집행 계고를 취소하기 위한 합리적 의견이 아닐 경우 내용대로 행정대집행 영장통지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- 붙임 1. 처분사전통지서(의견제출통지) 1부.  
2. 의견제출서1부. 끝.



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



공무직 **조민구** 주무관 대결 2024. 6. 24. 도로안전운영 전결  
**조한근** 과장

협조자 주무관 허승필 주무관 외출

시행 도로안전운영과-5335 (2024. 6. 24.) 접수

우 11796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1153(용현동)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/ <http://www.molit.go.kr/srocm>

전화번호 031-820-1744 팩스번호 031-847-7680 / [whalsrnjo@molit.go.kr](mailto:whalsrnjo@molit.go.kr) / 비공개(6)